

울산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나13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21. 11. 30 선고 2020나1353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080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연

담당변호사 구찬희

피고, 항소인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경

변론 종결 2021. 9. 7.

판결 선고 2021. 11. 30.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0805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7. 4. 1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7. 6. 21. 접수 제467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 주장의 요지 항소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 제기하였던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들은 D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항소취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지 않아 피고도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 1)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항소인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 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제1심 선고 후 각자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항소취하 합의의 효력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가) 원고가 피고 및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는 한편(자백간주 판결), B에 대한 소 중 일부 청구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하였다.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20. 7. 13. 항소하였고, B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소송대리인 소속 직원 M과 피고 소송대리인 소속 직원 L는 2020. 7. 16. 원고와 피고가 각자 제기한 항소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M: 네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저희 의뢰인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말씀드린 저희가 항소취하하고 C(피고)에서 항소취하하면 저희가 또 처분금지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하고 또 B에서는 어쨌든 이에 대해서 취하하고 이렇게 됐는데.

- 중략 -

L: 제가 알아서할게요. 바로 취하서 바로 접수시킬게요.

M: 예예. 그러면 제가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먼저 제출을 할테니까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L: 예, 바로 확인하고.

M: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 확인되시면 항소취하서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 원고 소송대리인 소속 직원 N는 2020. 7. 16. 울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항소에 대한 취하서 및 원고의 B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울산지방법원 2019카단12183호)의 취하서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 소송대리인 소속 직원 L는 2020. 7. 16. 피고 소송대리인 O 변호사의 결재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행각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라 한다)에 ○ 변호사의 도장을 날인한 후, 원고 대리인의 사무실에 팩스로 전송하였다.

합의이행각서

사건 2019가단108052호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합의조항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항소를 취하한다.
3. 위 사건과 관련한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2019카단12183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을 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20. 7. 16.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연 담당변호사 구찬희

위 피고 C(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O

바) B은 2020. 7. 16. 울산지방법원에 원고에 대한 가처분이의신청 사건(울산지방법원 2019카단12486호)의 취하서를 제출하고, 2020. 7. 20. 이 법원에 원고의 항소취하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항소취하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명시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각 항소를 취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를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

아) 피고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원고 소송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 소송대리인 측에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항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부함에 따라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 내용대로 합의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고, 원고가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대로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대로 항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준영

판사장성신

판사박관형

별지